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 경위

- 제출일자: 2023. 6. 1.
- 제출자: 서구청장
- 회부일자: 2023. 6. 7.(의안번호 제447호)
- 검토기간: 2023. 6. 7. ~ 6. 13.

2. 주요 내용

-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5조)
- 위원회 기능을 나타내는 명칭 변경, 위원 구성 사항 등 정비
(안 제6조 ~ 제8조)
- 기타 인용조문, 띄어쓰기 및 체계·자구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나. 입법예고: 2023. 5. 1. ~ 5. 22.(접수된 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등 주차시설 확충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치입법에 관한 제반 절차 역시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나. 조문별 주요 검토 사항

- 안 제1조는 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관한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문장이 길어졌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 위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 언급이 누락되었으므로 불임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고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안 제6조제1항의 위원회 명칭 변경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제3항의 경우 위상을 달리하여야 할 내용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서 의미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그 일부를 유사 조례의 형식¹⁰⁾에 맞추어 불임 수정 의견과 같이 고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에 신설한 제4항의 근거 규정¹¹⁾을 보면 제안설명과 달리 회의록 작성은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의 의무 사항이어서 조례에 그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회의 회의록을 당연히 작성하여야 하므로 안 제8조제4항은 신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¹²⁾
- 안 제8조의2는 각 항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의 해촉)와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안 제9조(수당 등) 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10)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안전국장이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회의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규정을 조례에 재수록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에 명시된 책무나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면서 일일이 어느 법령의 어느 규정에 근거한다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운영 조례」 제13조¹³⁾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함께 삭제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용어는 대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 정비되었고 어문규범에 따른 띄어쓰기 등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되었으나 이번 정비 대상에서 누락된 용어¹⁴⁾가 몇몇 남아 있으므로 다음 개정 시에는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종합 의견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달라진 조문을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용어와 문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바로잡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일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표현이나 법규 체계의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 여부를 놓고 충분히 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개정조례안 수정 내역

개정조례안	수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 ----- ----- -----.

13)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 예를 들면,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제5제5항) ⇒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부의하는’(제7조제4호) ⇒ ‘심의에 부치는’, ‘위원에 대하여는’(제9조) ⇒ ‘위원에게는’, ‘회계연도 마다’(제10조의2제1항) ⇒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제10조의2제2항제2호) ⇒ ‘해당 연도’ 등.

개정조례안	수정 의견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8조의2 <삭제></p> <p>제9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 -- 부구청장이 되고 ----- -----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명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④ <삭제></p> <p>제8조의2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수당 등) <삭제></p>